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정	2014. 1. 28.	총재결재	금융기획팀-107
개정	2014. 8. 14.	총재결재	금융기획팀-635
	2015. 4. 24.	총재결재	금융기획팀-349
	2015. 6. 22.	총재결재	금융기획팀-491
	2017. 8. 30.	총재결재	금융기획팀-547
	2019. 8. 27.	총재결재	금융기획팀-478
	2021. 8. 26.	총재결재	금융기획팀-528
	2023. 8. 25.	총재결재	금융기획팀-668
	2024. 3. 15.	총재결재	금융기획팀-28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4조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의 범위)** 이 세칙에서 “지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부문)** 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에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지역경제여건, 지역산업특성 등에 비추어 중점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부문을 전략지원부문에,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을 특별지원부문에, 그 밖의 부문은 일반지원부문에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각 지역본부장은 제3조의 지원부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한다.

1.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2.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에 대한 대출
3.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4.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이차보전 대출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대출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4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금융기관 배정방법)** 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지역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결제모점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실적은 그 중소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결제모점별 한도를 산정할 경우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실적을 우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전략지원부문 운용)** ① 각 지역본부장은 전략지원부문의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규모는 해당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전략지원부문의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배정한다.

③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기준 40억원) 이내로 한다.

**제7조(특별지원부문 운용)** ① 각 지역본부장은 특별지원부문의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특별지원부문의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배정한다.

③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기준 20억원) 이내로 한다.

**제8조(일반지원부문 운용)** ① 각 지역본부장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략지원부문과 특별지원부문으로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으로 배정한다.

- ②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 이내로 배정한다.
- ③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기준 20억원) 이내로 한다.
- ④ 각 지역본부장은 제6조제1항의 전략지원부문의 운용규모 소진으로 전략지원부문에 속한 지원대상 업체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실적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6조제3항을 따른다.
- ⑤ 각 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의 특별지원부문의 운용규모 소진으로 특별지원부문에 속한 지원대상 업체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실적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7조제3항을 따른다.

**제9조(지원일몰제)** 각 지역본부장은 누적수혜 기간, 금액 등이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을 지원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협의회)** 각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 부분부장, 업무팀장 등 5인 이상으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기준 사전협의)** 각 지역본부장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변경 시 본부와 변경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기준의 대외공표)** 각 지역본부장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한다.

## 부 칙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정 2024. 3. 18. 국장결재 금융기획팀-285

**제1조(목적)** 이 절차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은행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의료·교육 관련기업
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15. 기타 지원기업
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업체의 지원부문 및 선정 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① 각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대출취급실적을 대상으

로 한다. 지역본부별 담당지역은 <별표2>에 따른다.

1. 각 지역본부 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각 지역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더라도 그날은 기간에 산입한다.
- ③ 제1항의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되는 세칙 제4조제2항제6호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 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
  2. 부동산업, 주점업 등 <별표3>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
  3. 그 밖에 각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

**제4조(대출취급실적 제출)** ①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달 15일까지(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취급실적을 심사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심사)** ① 각 지역본부장은 매월 배정 이후 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후심사 검증대상 목록을 생성한 후 위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대상 목록 이외의 대출취급실적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요청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사후심사를 위한 징구자료 목록 및 자료 제출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 결과를 다음 달 한도 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관리)** ① 각 지역본부장은 매분기 직전월에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직전 3개월간 대출취급시 금리 감면폭,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모점별 등급을 산정하며, 산정이 완료된 등급은 해당 분기 중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각 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은 A, B, C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 금융기관 결제모집 중 A등급은 20% 이하, B등급은 60% 이상, C등급은 20% 이하가 되도록 배분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C등급인 금융기관 결제모집에 대해 해당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 중 매월 대출취급실적에 따른 배정액의 10%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을 A등급(A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인 금융기관의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재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재)** ① 각 지역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재에 따른 대출한도 감축금액 또는 기존대출금 회수금액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금액이 대출취급실적에 따른 배정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상회하는 금액을 이월하거나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일몰제)** 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에 대해 제재하고 마지막 지원 실적시점부터 2년간 신규지원을 중단한다.

## 부 칙 <2024. 3. 18.>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 및 각 지역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 관련 종전 세칙 및 운용기준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sup>1)2)</sup>**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A2	벤처기업		
A3	혁신기업		
A4	녹색기업		
A5	연구개발우수 기업		
A6	추천기업 <sup>3)</sup>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A9	전입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A12	의료·교육 관련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sup>4)</sup>		
A15	기타 지원기업 <sup>4)</sup>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3)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본부별 담당지역**

지역본부	담당지역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본부 담당지역 제외)
목포본부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본부 담당지역 제외)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본부	충청북도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강릉본부 담당지역 제외)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본부	경기도(인천본부 담당지역 제외)
경남본부	경상남도
강릉본부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포항본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별표3>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sup>1)</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 취급실적 명세(T9)

◆ T9-명세

- 전문종류 : 여신 -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취급실적 명세
- 전문경로 : 금융기관 → 한국은행
- 송신시점 : 09시 00분

항 목	길이	누계	내 용
금융기관	9(4)	4	- 금융기관 4자리 코드
처리일자	9(8)	12	- yyyymmdd
업무구분	9(4)	16	- 언제든지 2409
빈칸1	X(1)	17	- 언제든지 Space
대출실적년월	9(6)	23	- yyyymm(전월)
각행관리번호	X(20)	43	- 각 금융기관관리번호(식별자), 숫자 또는 특수 문자
지원대상	9(2)	45	- 지원대상 코드(A1~A18)의 숫자 부분
지원부문	9(2)	47	01. 일반1, 02. 특별, 03. 일반2, 04. 전략, 05. 한도1, 06. 한도2, 07. 한도3
관할 지역본부	9(4)	51	- 지역본부 4자리 코드
폐업업체 여부	9(2)	53	00. 폐업업체 아님, 11. 위규
폐업업체 여부_금융기관 소명	9(2)	55	00. 폐업업체 아님, 22. 업체 신고 지연
대기업 여부	9(2)	57	00. 대기업 아님, 31. 위규
주채무계열 소속 여부	9(2)	59	00. 주채무계열 소속 아님, 32. 위규
중도상환보고 누락	9(2)	61	00. 중도상환보고 누락 없음, 41. 위규
부도업체 여부	9(2)	63	00. 부도업체 아님, 51. 위규
규정위반 등 기타	9(2)	65	00. 기타 위규 아님, 52. 위규
빈칸2	X(1)	66	- 언제든지 Space
업체정보 - 업체명	X(20)	86	
- 업체소재지	9(5)	91	- 우편번호 5자리 숫자
- 사업자구분	9(1)	92	1. 개인, 2.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9(10)	102	
- 법인등록번호	9(13)	115	- 개인사업자는 공란
- 업종	9(5)	120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 신용등급	9(2)	122	- 금감원 앞 보고 10등급 기준, 무등급인 경우 00 입력
빈칸3	X(1)	123	- 언제든지 Space
대출정보 - 취급점포명	X(12)	135	
- 취급점소재지	9(5)	140	- 우편번호 5자리 숫자
- 자금구분	9(1)	141	1. 시설, 2. 운전
- 보전방법	9(1)	142	1. 순수신용, 2. 담보, 3. 보증, 4. 혼합
- 대출실행일	9(8)	150	- yyyymmdd
- 대출만기일	9(8)	158	- yyyymmdd
- 대출잔액(원)	9(15)	173	- 0이면 예리
- 대출금리	9(4)	177	- 예) 1.23%면 "012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대출금리감면폭	9(4)	181	- 예) 1.23%p면 "012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계	X(181)		

##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발취)

**제37조(제재)** ①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금융기관이 세칙 제26조,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세칙」 또는 거래약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대출금의 즉시 회수
2.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대출금액 또는 한국은행 대출한도에 반영된 대출금액 중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금액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 감축

< 후 략 >

<별표 4>

###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 주: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다만,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안정화(설비)대출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보지 않음)
- 2) 중소기업대출안정화(영세)대출을 수혜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과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4. 3. 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제주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서식>의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배정 관련 심사표
2. 대출금원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사본)
4. 금리산출표(사본)
5.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6. 그 밖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금융기관의 금리 감면폭(30%)
2. 절차 제7조에 따른 제재 빈도(20%)
3. 절차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한 준수 여부(20%)
4. 제출자료의 정확성(20%)
5. 업무 협조도(1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sup>1)2)</sup>**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1	창업기업	일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영업개시 후 3년 이내인 기업
A2	벤처기업	일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3	혁신기업	일반	① 다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사업목적과 관련있는 특허 - ISO인증 - 정부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정 또는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A4	녹색기업	전략	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제품 생산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그린비즈(Green-Biz) 기업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 태양력발전업체(KSIC 35114)는 제외)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KSIC 37~39) -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KSIC 28114, 28202)
A6	추천기업 <sup>3)</sup>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A7	지역특화 산업 영위기업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JQ)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다음의 관광업체로 동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등록, 허가 또는 신고, 지정된 업체 o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단,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에 한함) - 자동차대여사업체(KSIC 76110)
A8	지역전략 산업영위 기업	전략	- '지능형 관광서비스'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청정바이오'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그린에너지 솔루션'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9	전입기업	일반	- 타지역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A10	수출관련 기업	일반	- 수출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최근 연도기준)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략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어업자·농어업법인 포함)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sup>4)</sup>	일반	- 계절적 자금 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sup>4)</sup>	일반	-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결과 또는 지역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A16	경기부진·경기민감 업종영위 기업	특별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등 규모기준에 따른 소기업  ① 업종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KSIC 55~56) ○ 도매 및 소매업(KSIC 45~47) (단, 대형종합소매업(4711), 담배소매업(4722), 연료소매업(477), 약국(47811) 제외)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KSIC 752) ○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②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 매출액은 직전 12개월을 영업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창업 등으로 12개월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연환산한 매출액을 따름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3)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1-1>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해당 업종**

산 업	KSIC 코드 (제10차)	업 종	
지능형 관광서비스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0191	공연 기획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청정바이오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산 업	KSIC 코드 (제10차)	업 종
청정바이오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그린에너지 솔루션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492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sup>1)</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 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